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8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검 토 보 고 서



2024. 12.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검 토 보 고 서

2024. 12. 10.

운영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 제출일자: 2024. 11. 19.
- 회부일자: 2024. 11. 19.
- 검토기간: 2024. 11. 21. ~ 11. 26.

2.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3. 편성방향

- 의회 총액한도제 관련 경비는 전년도 편성기준 대비 2.6% 증액 편성
- 대상: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
역량개발비(민간위탁) 등 4개 통계목
- 의회 업무 추진 지원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 반영
- 2024. 5. 13.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의정활동비
인상분 예산 반영
- 2024. 1. 1. 9급 1명 증원 등에 따른 보수 예산 반영

4. 2025년도 본예산안 내역(의회사무국 소관)

가. 세입예산: 해당 없음.

나. 세출예산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도 예산	2024년도 당초 예산	증 감	증감률(%)
의회사무국	4,711,943	4,418,817	293,126	6.6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1,763,219	1,613,950	149,269	9.2
합리적인 인사행정	7,682	7,682	0	0
의회 발전 교육 및 교류	397,677	391,600	6,077	1.6
인력운영비 (의회사무국)	2,443,973	2,292,489	151,484	6.6
기본경비 (의회사무국)	99,392	113,096	△13,704	△12.1

주요 편성 내역

- 의회 총액한도제 관련 경비는 전년도 편성기준에서 2.6% 증가한 9,632천원 증액 편성
 - 증감내역: 의정운영공통경비 4,023천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532천원, 의원국외여비 2,597천원,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480천원
- 의회 로비(2층) 벽면 리모델링 24,750천원 신규 편성
- 대회의실 및 의장 탕비실 환경개선 리모델링 40,000천원 신규 편성
- 의회 로비(2층)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구입 13,000천원 신규 편성
- 대회의실 환경개선 집기 대체구입 15,245천원 신규 편성
- SNS 홍보이벤트 2,000천원 신규 편성

- 2024. 5. 13.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의정활동비 115,200천원 증액 편성
- 2024. 1. 1. 9급 1명 증원, 보수 인상률 등에 따른 보수 151,480천원 증액 편성

5. 검토의견

- 의회사무국의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47억 1,194만 3천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억 9,312만 6천원(6.6%) 증액 편성하였음.
⇒ 달서구 전체 예산액 1조 1,255억 9,707만원의 0.4%
- 주요 편성내역으로 2025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의회 총액 한도제 관련 4개 통계목 경비인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 추진비, 의회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가 2024년도 편성기준 대비 2.6% 증가한 9,632천원이 증액되어 3억 8,010만 1천원을 편성하였음.
- 의정활동 홍보 및 의회 이미지 향상을 위한 의회 로비(2층) 벽면 리모델링 및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후화된 대회의실 및 의장 부속실 탕비실 환경개선 리모델링 및 대회의실 집기 대체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였음.
-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의정활동비 인상분을 증액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2024년 1월 1일 의회사무국 정원이 조정됨에 따라 증원된 9급 1명과 직원의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기본급, 수당 등 보수를 증액 편성하였음.
- 이번 예산안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노후화된 대회의실 등의 환경개선을 통해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비 및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구민과 함께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사업 추진 시 집행계획을 세심하게 수립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집행해야 할 것이며, 위원회에서는 증액 또는 신규 사업에 대해 명확한 산출 근거, 사업의 효과성, 운영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임.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

【붙임】

■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

○ 대 상: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4개 통계목

○ 총액한도 산정방법

- 전년도 총액한도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매년 한도 설정

* 전전년도 7월 대비 전년도 7월 소비자물가등락률(출처 KOSIS, 소비자물가조사): 2.6%

→ **2025년 총액한도: 380,101천원**

※ 2024년 총액한도 370,469천원(추가편성액 4,729천원 제외)의 2.6%

■ 지방의회 관련 경비 편성

○ 의원국외여비

(단위: 천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81,840 1명기준: 2,885	83,088 1명기준: 2,885	86,256 1명기준: 2,995	100,800 1명기준: 3,500	103,397 1명기준: 3,590

○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단위: 천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9,200 1명기준: 800	19,296 1명기준: 804	20,040 1명기준: 835	20,400 1명기준: 880	20,880 1명기준: 870

○ 의정운영공통경비

(단위: 천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53,965	153,801	159,414	150,585	154,608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92,610	93,075	96,425	98,684	101,216
의 장	31,046	31,202	32,325	33,072	33,924
부의장	14,818	14,892	15,428	15,792	16,200
운영위원장	10,584	10,637	11,020	11,280	11,568
기획재경위원장	10,584	10,637	11,020	11,280	11,568
복지문화위원장	10,584	10,637	11,020	11,280	11,568
도시환경위원장	10,584	10,637	11,020	11,280	11,568
예산결산특별위원장	4,410	4,433	4,592	4,700	4,820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